

日本 搜查警察活動의 廣域化 對應을 위한 制度改正에 對하여

篠原弘志 著

(日本警察廳刑事企劃課長)

※편집반 역(경찰학논집 '94년 8월호)

최근 급속히 광역화, 기동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수사단의 발족에 즈음하여, 향후 광역수사단의 효율적운영과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일본의 광역수사관련 제도와 최근의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目 次〉

- I. 序論
- II. 改正 背景
- III. 從來 制度의 問題點
- IV. 改正의 概要
- V. 結論

I. 序論

금번 警察法의 一部 改正으로 搜查 警察活動의 廣域化對應을 爲하여 隣(近)接 市道郡 경찰이 공동으로 境界周邊의 事案을 處理하기 위한 權限, 즉 둘 以上의 市道郡 경찰이 共同으로 事案을 處理하는 경우에 있어 指揮의 一

元化 等に 關한 規定이 整備되고 또한 이것에 이어서 경찰법 施行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政令(1994年政令 第1994年國家公安委員會規則 第21號)이 七月一九日부터 施行되었다.

이법에 依하여 廣域犯罪과 關한 搜查의 협조에 關하여 合同搜查 및 共同搜查, 廣域搜查隊의 編成 等이 規定上으로 制度化된 것 이외에 專門搜查員을 市道郡 경찰의 管轄區域을 벗어나 運用하기 위한 諸規定의 整備가 行하여 졌다.

本 原稿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一連의 刑事 警察에 關한 制度의 改定에 關해서 그 背景과 意義 및 概要를 서술한 것이다.

더하여 글중의 意見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개인적 見解임을 添언해 둔다.

以上「法」이라 함은 改正後의 警察法(1954

66

犯人이 犯行後 극히 짧은 時間안에 市·道·郡 境界를 넘어 逃走하거나 잠적하거나 하는 事件이 多發하고 있으므로 關係 市·道·郡 警察이 상호 협조하여 共同으로 初動搜查에 임하는 것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99

年法律第162號)을, 「舊法」이라 함은 改正前의 경찰법을, 「令」이라 함은 改正後의 警察法施行令(1954年政令第151號)을, 「舊令」이라 함은 改正前의 경찰법시행령을, 「規則」이라 함은 改正後의 犯罪搜查共助規則(1957年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3號)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한다.

II. 改正의 背景

1. 自動車 利用 犯罪의 增加와 市道郡 境界의 周邊區域의 市街地化

自動車の 普及, 高速道路를 중심으로 한 道路網의 整備는 사람들의 活動範圍를 飛躍적으로 擴大시켜 短時間 이내에 市·道·郡의 世界를 넘어 移動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犯罪面에서도 自動車の 利用이 一般化되고 있고, 1993年度에 檢舉된 刑法犯으로 犯行現場으로 부터 犯人이 逃走한 것 가운데 자동차를 利用하여 逃走한 비율은 54.0%

로 全體의 過半數를 占하고 있다. 이것을 1988년과 비교하면 14.1포인트 증가에 이르고 있고, 그 증가의 현저함은 뚜렷하다 할 수 있다.

한편 交通手段의 發達과 經濟活動等の 廣域化와 더불어 몇개의 市·道·郡 境界 周邊에 있어서는 市街地가 該當 境界地를 넘어서 連續적으로 形成되어 社會的 經濟적으로 하나의 통합권을 이루는 地域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같은 일들로 인하여 犯人이 犯行後 극히 짧은 時間안에 市·道·郡 境界를 넘어 逃走하거나 잠적하거나 하는 事件이 多發하고 있으므로 關係 市·道·郡 警察이 상호 협조하여 共同으로 初動搜查에 임하는 것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2. 複數의 市·道·郡 警察에 依한 搜查가 必要한 事件의 增加

最近에 있어서는 市·道·郡 境界를 넘어서 通勤, 通學하는 것이 日常化되어 사람들의 生活範圍擴大와 經濟活動의 地理的 範圍의 擴

대는 범죄와 이것에 대응하는捜査에 커다란變化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被疑者와 被害者等 捜査의 對象이 되는 人物의 行動範圍가 廣域化하면 犯罪行爲 自體가 하나의 市·道·郡 警察의 管轄區域內에서 行하여진것이라 하더라도 그 捜査는 廣域的으로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最近에 있어서 惡質 商法事案은 通商 複數의 市道郡에 걸쳐 多數의 被害者를 동반하며, 經濟犯罪의 일례인 贈收賄事件에 있어서도 收賄者가 勤務하고 있는 官公서와 贈賄側 企業 등이 다른 市道郡에 所在하는 경우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事案에 對하여 捜査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는 關係 市道郡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를 行할 경우가 많다.

3. 犯罪의 複雜化·巧妙化에 依한 捜査의 專門化

高度情報化의 현저한 進展等 社會의 急速한 變化는 犯罪者에게 그 犯罪를 容易하게 하는 道具 및 環境을 계속하여 提供하는 것과 함께 犯罪 自體의 複雜化를 加速시켜 捜査에 있어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以下「專門的 捜査力」이라고 함)의 必要性을 한층 高조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예를 들면 大規模의 業務上 過失致傷 事案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事案 發生의 原因이 되는 各種 業務가 컴퓨터 시스템을 시작으로 하는 高度한 科學技術을 채택하여 개개의 過程이 블랙박스化됨과 더불어 새로운 技術革新

에 依해서 短期間 以外에 業務의 실체가 變更되는 일도 흔치 않다. 그러나 이와같은 捜査에 專門的 捜査力을 要求받는 事案의 대부분은 그 發生 頻度가 적고 모든 市道郡 경찰에 對하여 이러한 人材育成을 시도하는 것이 대단히 困難한 일이므로 市道郡 警察의 태두리에 구애받지 않는 專門捜査員의 育成 및 運用이 不可避한 것이다.

III. 從來 制度의 問題點

1. 管區廣域捜査隊

茨城(이마라기)縣西部, 群馬(군마)縣南東部, 櫛木(도지기)縣南部 및 埼玉(사이타마)縣北部 地域(소위 北關東地域)은 近年 工業團地의 開發, 各種 交通網의 整備, 大型슈퍼의 進出 等に 依해 連續的으로 市街地가 形成된 區域이지만, 이 區域內에는 幼兒를 對象으로 하는 殺人事件과 連續強盜致傷事件等 地域住民을 대단히 不安하게 하는 事件이 發生하여 그 檢舉에 對한 강한 期待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1年 3月 全國施行에 앞서 關係四縣警察에 依한 北關東廣域捜査隊가 編成되었다. 또한 이것에 이어서 1992年 2월에는 같은 特徵을 갖는 岐阜(기후)縣 愛知(아이치)縣 三重(미에)縣의 境界 周邊地域에 이들 三縣 警察에 依해서 西東海廣域捜査隊가 編成되었다.

이 管區廣域捜査隊는 社會的 經濟的으로 一體性이 있는 區域에 있어 廣域的인 初動捜査

“

捜査員이 각각 소속하는 市道郡 경찰의 管轄區域에 구애받지 않고 職權을 行할 수 있는 法律上的 根據가 必要함과 아울러 그 活動이 한개의 部隊로서 有機的 협조아래 行하여 질 수 있도록 각각의 隊員에 對한 指揮系統을 一元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

와 犯人의 체포 등을 共同으로 行하기 위한 部隊이지만 이러한 活動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關係 市道郡 경찰의 捜査員이 각각 소속하는 市道郡 경찰의 管轄區域에 구애받지 않고 職權을 行할 수 있는 法律上的 根據가 必要함과 아울러 그 活動이 한개의 部隊로서 有機的 협조아래 行하여 질 수 있도록 각각의 隊員에 對한 指揮系統을 一元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여기에서 舊法에 있어 市道郡 警察의 管轄區域外의 權限에 關한 規定안에 管區廣域捜査隊를 編成함에 있어 適用可能한 規定은 第60條 2의 境界附近의 事案에 있어 權限에 關한 規定 및 第61條의 管轄區域外의 權限에 關한 規定이다.

그러나 舊法 第60條 2의 規定은 市道郡 境界附近의 事案에 있어 隣接하는 市道郡 경찰이 對應하기 위한 것으로 近接한 市道郡 경찰은 最初부터 除外됨과 아울러 舊令 第7條 2에 있어 對象事案에 관계하는 區域이 境界로부터 原則적으로 2킬로미터 以內로 限定되어 앞에서 서술한 自動車利用犯罪의 急增 등으로

부터 보았을 때 實際 이 規定에 의해서 廣域 捜査隊를 編成하는 것은 困難하다.

또한 舊法 第61條의 規定에 있어서도 初動捜査 段階에서 該當事件이 자신의 管轄區域의 公安 維持에 關連한 것인가 아닌가에 關해서 判斷을 해야만 한다는 點에서 그 適用은 역시 無理이다.

그리하여 管區廣域捜査隊의 警察法의 規定 適用에 關해서는 事件 發生地를 管轄하는 市道郡 경찰이 다른 市道郡 경찰에 對해서 경찰법 제60조의 援助要求規定에 근거하여 隊員의 派遣을 要求하여 다른 市道郡 경찰이 이것에 應하는 것에 의해서 部隊를 編成한다고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이 方法에 의하면 境界로부터 2킬로미터 以內의 區域에 關係하는 事案에 限한다고 하는 限定도 없고, 隊員에 對한 指揮도 事件 發生地를 管轄하는 市道郡 경찰의 警察本部長 아래로 一元化된다.

그러나 管區廣域捜査隊에 對한 援助 要求規定에 依해서 다른 問題點이 생겨나게 되었다.

첫번째는 援助의 要求와 市道郡 경찰의 管

轄責任 關係이다. 앞서 말한대로 시도군 경찰은 자신의 관할구역의 公安維持에 關連하여 必要한 限度에 對하여는 그 관할구역을 넘어서 권한을 미치게 할 수 있지만 管區廣域搜查隊가 出動한 事案에 있어 事件 發生地를 管轄하는 시도군 경찰以外的 시도군 경찰은 예를 들어 수사관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에도 搜查員을 派遣할 뿐 자신의 책임하에 수사를 行하지 않게 되어 通常의 搜查管轄의 견해에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는 結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上의 問題가 자칫하면 수사원의 意識에도 反映되어 소위 「應援根性」적인 對應을 낳을 걱정도 否定할 수 없다.

두번째는 手續의 迅速性의 問題이다.

援助의 要求에 관해서는 경찰법上 원조를 요구하는 시도군 公安委員會가 상대방의 시도군 경찰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本來 각각의 시도군 公安維持를 위하여 설치된 경찰력을 一時的이긴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되는 以上 이것을 管理하는 公安委員會의 判斷이 必要한 것이다. 公安委員會는 合義制의 關係인 이상 항상 개최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突發的인 事案에 對處하는 初動搜查等의 場面에 있어서 이 手續을 履行함에 迅速한 搜查의 시작을 實現할 수 없게 된다.

세번째는 廣域初動搜查 等を 行할 對象事案의 範圍의 問題이다.

援助要求의 制度는 本來 하나의 시도군 경찰의 경찰력에 依해서는 對應할 수 없는 事態가 發生한 경우를 豫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대상지역에 있어 경찰력이 비교적 여유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비교적 幅넓은 事案의 援助 要求에 對하여 그 지원이 可能하지만 경찰력의 여유가 없는 地域에 있어서는 廣域初動搜查 等を 行해야만 할 對象事案도 그 體制로써는 경찰력 不足으로 大規模事案의 수사에 한정 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이 結果 警視廳·神奈川(가나가와) 都縣境界, 京都(교오또)大阪(오오사카) 府境界 및 大阪·兵庫(효오고) 府縣境界 區域에 있어서는 경찰법 제60조 規定에 依하여 援助要求制度에 準한 初動搜查協定이 締結되어 있지만 그 對象事案이 限定되어 있는 까닭으로(따라서 實際로 協定이 活用된 경우가 많지 않을 수 밖에 없다) 部隊를 編成활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 合同搜查의 推進

複數의 시도군 경찰에 依한 搜查가 必要한 事件에 있어서는 각각의 關係 시도군 경찰의 수사활동이 廣域的 時點으로 부터 有機的 협조를 가지고 行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지금까지 關係 시도군 경찰에 依한 共同搜查·合同搜查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왔다. 그동안 共同搜查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군 경찰이 각각의 指揮權을 가져왔고 상호 協議에 依하여 搜查의 方針을 統一하거나 搜查情報를 交換함은 搜查를 效率的으로 進行시키기 위함이고, 廣域的으로 連續 發生되는 窃盜事件 搜查 等に 主로 行하여져 왔다.

“

航空機事故와 列車事故 等の 大規模事故事件과 高度의 財務解析 等 專門的 搜查를 必要로 하는 重要知能犯事件, 少數言語에 依한 通譯을 必要로 하는 事件 等に 있어서는 이미 專門搜查員을 全國規模 또는 管區規模로 登錄시켜 相互 活用하는 制度가 構築되어 運用되고 있다.

”

이것에 對하여 合同搜查는 관계 시도군 경찰이 指揮權을 一元化하여 搜查를 進行하며 通常 한개의 事件(殺人事件과 死體遺棄事件과 같은 一連의 事件을 포함)에 對하여 複數의 시도군 경찰이 一體가 되어 수사를 行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 主로 시행되어 왔다. 여기에서 共同搜查는 경찰법 제59조에 依한 시도군 경찰의 相互協力の 한 형태로써 施行된 것이기 때문에 特別한 조치가 必要하지 않지만, 合同搜查는 複數의 시도군 경찰이 指揮를 一元化해야 하는 것이 前提로 되어 있으므로 무엇인가 法的 根據가 必要하다. 그러나 舊法에는 이 點을 명백히 定한 規定이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법 제60조의 援助의 要求規定을 適用할 수밖에 없었지만 合同搜查에 있어 援助要求規定의 適用에 관해서는 管區廣域搜查隊 以上の 問題가 있었다. 즉 合同搜查를 行하는 關係 시도군 경찰은 그 對象이 되는 事件에 있어 通常 明確한 搜查管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各 市道郡 警察의 管轄責任이 한층 不明確

한 것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點이다.

日本 警察組織의 강한 힘은 各 시도군 경찰이 各各의 管轄責任을 깊이 自覺하여 職務를 담당해 왔다는 點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協동수사로 인한 管轄責任의 不明確化는 가능한 限 回避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3. 專門搜查員의 廣域適用

專門的 搜查力을 必要로 하는 事件의 搜查를 담당함에 있어서는 시도군 경찰의 태두리를 벗어나 專門搜查員을 廣域的으로 活用하는 일이 不可避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全國에서 이와 같은 事件의 搜查를 經驗하고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人材를 登錄시켜 일단 事件이 發生한 경우에 경찰법 제60조의 規定에 依하여 相互派遣을 실행한다고 하는 方法이 不可避해 진다.

그러므로 以前부터 航空機事故와 列車事故 等の 大規模事故事件과 高度의 財務解析 等 專門的 搜查를 必要로 하는 重要知能犯事件,

少數言語에 의한 通譯을 必要로 하는 事件 等に 있어서는 이미 專門搜查員을 全國規模 또는 管區規模로 登錄시켜 相互 活用하는 制度가 構築되어 運用되고 있다.

그러나 專門搜查員의 廣域運用을 行할 必要가 있는 事案을 위와같은 事案들에 限定짓지 말고, 今後 다시 그 範圍를 擴大시킬 必要가 있지만 거기에는 警察法 第60條의 規定適用의 形式을 보다 一般化하여 迅速하고 效率의 運用이 實現될 수 있도록 制度의 充實을 기하는 일이 피해갈 수 없는 課題로 되어 있다.

IV. 改正의 概要

금번 刑事警察制度의 改正은 이제까지 서술해 온 搜查에 관련한 警察活動의 廣域化對應上的 問題點을 法的으로도 實務的으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以下 그 概要를 紹介한다.

1. 廣域搜查隊

(1) 制度의 概要

舊法 第60條 2 規定의 改正에 依하여 協議의 主體가 從來의 「隣近」하는 市道郡 警察로부터 「近接」하는 市道郡 警察에도 擴大됨과 아울러 事案의 處理對象區域이 現行의 「境界의 附近區域」에서 「社會的 經濟的 一體性的 程度, 地理的 狀況 等으로 부터 判斷해서 相互 權限을 미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境界 周邊區域」으로 廣域化되었다.

이것에 이어서 法 第60條 2의 政令 즉. 令 第7條 2에서 정한 市道郡 警察의 管轄區域의 境界로 부터의 距離가 原則적으로 15킬로미터로 되었다.

또한 法 第61條 2의 規定이 新設되어 警察 本部長은 該當市道郡 경찰이 다른 시도군 경찰의 管轄區域에 權限을 미치고 그의 다른 시도군 경찰과 共同으로 事案을 處理하는 경우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相互協議하여 결정하여, 이에 의해 關係市道郡 경찰의 경찰관에게 해당 事案의 處理에 관련하여 該當 協議에 의해 미리 정한 方針의 範圍內에서 각각의 시도군 경찰의 경찰직원에 對하여 必要한 指揮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법 제60조 規定에 근거하여 施行되어 왔던 社會的 經濟的으로 하나의 일체감을 갖는 시도군 경찰의 境界周邊區域에 있어 廣域初動搜查에 관해서는 隣(近)接 市道郡 경찰은 法 第60條 2 및 第61條 2를 根據로 각각 자신의 事務로써 行함과 동시에 그 指揮를 一元化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規則에도 廣域初動搜查 等に 關하여 第27條부터 第30條까지의 規定이 新設되어 法 第60條 2 및 第61條 2에 근거한 隣(近)接 시도군 경찰에 의한 시도군 境界周邊區域에 있어 初動搜查 等に 관해서는 관계 시도군 경찰이 協定(公安委員會協定(規則 第27條 1 項에 規定하는 것을 말함) 및 本部長協定(規則 第27條 第3項에 規定하는 것을 말함)을 締結하여 廣域搜查隊를 編成 施行할 수 있게

66

廣域捜査隊를 編成하여 廣域初動捜査 等を 共同으로 施行해야 할 區域(以下「特定區域」이라 함)은 「社會的·經濟的 一體性的 程度」等으로 判斷하여 廣域初動捜査 等を 共同으로 行할 必要가 있는 區域이지만(法 第60條 2 規則 第27條 第27條 第1項) 具體的으로는 市街地의 連續性, 犯罪의 發生狀況 等に 依해 判斷해야 할 것이다.

99

됨과 아울러 該當 協定에 定해야만 할 事項, 該當 協定內容의 警察廳 및 管轄警察局에의 報告, 警察廳에 의한 調整 等に 關해 必要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以上의 것으로 부터 앞에서 서술한 援助要求에 依한 問題點은 解消되게 되었고, 警視廳·神奈川(가나가와) 都縣 境界 等の 地域에 있어서도 廣域捜査에 依한 廣域初動捜査 等の 施行이 可能하게 되었다.

금년 7月末에 있어 새로운 制度에 依한 廣域捜査隊가 北美東地域 西東海地域 및 三遠地域(靜岡<시즈오카>·愛知<아이치>縣 周邊地域)에 이미 發足되어 있고, 今後 다시 7개 程度 地域에 廣域捜査隊가 設置될 것으로 생각된다.

(2) 解釋上的의 留意事項

廣域捜査隊를 編成할 경우에 있어 法과 規則의 解釋上的의 留意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廣域捜査隊를 編成하여 廣域初動捜査 等を 共同으로 施行해야 할 區域

廣域捜査隊를 編成하여 廣域初動捜査 等を 共同으로 施行해야 할 區域(以下「特定區域」이라 함)은 「社會的·經濟的 一體性的 程度」等으로 判斷하여 廣域初動捜査 等を 共同으로 行할 必要가 있는 區域이지만(法 第60條 2 規則 第27條 第27條 第1項) 具體的으로는 市街地의 連續性, 犯罪의 發生狀況 等に 依해 判斷해 할 것이다.

特定區域은 令 第7條 2에서 정한 15킬로미터의 距離範圍 內에서 公安委員會協定에 依해 결정된다. 더욱이 廣域捜査隊가 編成된 경우 그 活動區域은 關係 시도군 경찰의 管轄구역 全域에 미치는 것으로 特定區域에 限하는 것은 아니다.

2. 廣域捜査隊의 指揮

廣域捜査隊의 指揮는 關係 시도군 경찰의

警察本部長이 締結한 本部長協定에 依해 결정된 廣域搜查隊의 隊長이 一元적으로 이를 施行한다.(法 第61條 2 第1項, 規則 第27條 第3項, 第4項)

더욱이 관계 시도군 경찰의 數가 많아서 特定區域이 廣大할 경우는 시도군 경찰 相互間의 調整을 通하여 該當區域의 實情에 精通한 管區警察局的 警察官에게 廣域搜查隊의 指揮를 行하게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찰관은 專門搜查員으로써의 性格을 갖게 됨으로 後術의 規則 第13條 第1項에 依하여 專門搜查員의 派遣에 關한 協定에 따라서 派遣되는 것이 된다.(規則 第27條 第3項)

ㄷ. 廣域搜查隊의 任務

廣域搜查隊의 任務는 「境界周邊區域에 있어 犯罪의 初動搜查(事件의 發生을 認知한 段階의 搜查一般을 말함), 그 외에 犯人을 該當區域에서 發見하여 檢舉하기 위한 搜查이다. (規則 第27條 第1項) 具體적으로는 公安委員會協定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犯人을 現場 가까이에서 迅速히 檢舉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犯罪가 特定區域에서 發生한 경우와 이와 같은 犯罪의 犯人이 特定區域에 現在한다고 認定되는 경우 등에 있어 犯人의 追跡, 잠복, 檢索, 정보수집 等 犯人을 체포하기 위한 活動이 이것에 해당된다.」

2. 合同搜查 및 共同搜查

(1) 制度의 概要

合同搜查에 관해서는 法 第61條 2 規定의

新設에 의하여 關係 시도군 경찰이 각각 自己의 事務로써 搜查를 行하며 該 指揮에 關해서 는 어쨌든 關係 시도군 경찰중에서 하나의 경찰관에게 一元化시키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規則에도 第19條부터 26條까지의 規定이 新設되어 現在 實務上 施行되고 있는 合同搜查 및 共同搜查의 要件, 效果, 경찰청의 調整 方法 等이 明確化되었다.

具體적으로는 廣域重要犯罪의 搜查에 關해서 關係 시도군 경찰의 수사사항의 全部 또는 일부가 一致한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係 시도군 경찰의 警察本部長은 法 第61條 2의 規定에 依하여 協定을 締結하고 合同搜查本部 等を 설치하며 關係 시도군 경찰중에서 하나의 경찰관에게 指揮를 行하도록 하여 合同搜查를 施行하게 되며 그 외에 廣域重要犯罪의 搜查를 效率적으로 施行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共同搜查를 施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경찰청의 調整에 關해서는 시도군 경찰이 廣域重要犯罪를 認知했을때와 合同搜查 혹은 共同搜查를 시행 終了했을 때 警察廳에 對한 報告와 警察廳長官에 依한 合同搜查 혹은 共同搜查의 編成에 關한 指示 및 廣域重要犯罪를 早期에 解決하기 위해 特別히 必要가 인정된 경우에 있어, 關係 시도군 경찰 以外의 시도군 경찰에 對한 搜查共助의 指示에 필요한 근거가 확보되었다.

(2) 解釋上的 留意事項

合同搜查 또는 共同搜查를 實施함에 있어 法과 法則의 解析上的 留意事項은 다음과 같다.

ㄱ. 廣域重要犯罪(規則 第19條 第1項)

廣域重要犯罪에 관해서는 그 搜查에 必要한 經費를 國庫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 「多數市道郡 地域에 관계가 있는 重要한 犯罪」(경찰법 시행령 제2조 8호)와 같은 概念이지만 그 明確을 期하기 위하여 警察廳長官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多數都市郡 地域에 관계가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多數 시도군 地域에서 同一犯人이 連續적으로 犯罪을 범했다고 認定되는 경우, 그 외의 시도군 地域에 걸쳐서도 搜查를 行할 必要가 있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ㄴ. 關係 市道郡 警察의 範圍(規則 第19條 第2項)

이 點에 관해서는 搜查의 對象이 되는 犯罪에 대해 搜查의 管轄權이 있는 市道郡 警察(管轄權의 有無에 관한 견해는 從來와 같음) 중에서 犯罪地, 被疑者, 住居地 等の 有無 그 外에 該當 市道郡 警察과 犯罪와의 關係를 考慮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ㄷ. 合同搜查에 있어서 指揮

合同搜查에 있어 關係 市道郡 警察相互間 指揮의 一元化는 警察本部長이 締結한 協定에 따라 行하여진다.(法 第61條 2의 第1項, 規則 第60條 第1項) 이 指揮는 協定에 依해 定해진 方針의 範圍에 遵해서 施行할 수 있다.

具體적으로 어떠한 事項이 이 方針에 相當할 지는 各各의 事案을 따로 判斷할 수 밖에 없지만 「合同搜查本部長이 指揮를 行함에 있어 遵守해야 할 事項」(規則 第20條 第4項 第3號) 및 搜查上的 重要事項에 관계하는 指揮에 관해서 「미리 警察本部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하는 취지」는(第5項) 法 第61條 2 第1項 方針의 例가 된다.

3. 專門搜查員의 廣域的 活用

(1) 制度의 概要

規則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이 新設되어 都市郡 警察은 警察法 第60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해 警察廳 管區警察局 또는 다른 市道郡 경찰에 對하여 航空機事故, 列車事故 그 外에 경찰청長官이 인정하는 事案의 犯罪搜查에 對하여 專門的인 知識, 技能 또는 經驗을 갖고 있는 專門搜查員의 派遣을 要求할 때는 미리 相對方과 協定을 締結하여 該當 協定에 따라서 要求함과 더불어 시도군 경찰은 이 協定을 締結했을 때에는 전문수사원 소속의 시도군 경찰은 該當 協定에 관계하는 專門搜查員에 關한 資料를 警察廳에 提供하기로 되어 있다.

各 시도군 경찰 및 경찰청이 이 規定에 依한 協定을 相互 결부시킴으로 인하여 專門搜查員에 關한 資料의 交換, 手續 等 專門搜查員의 廣域運用에 關한 制度의 基本的인 틀이 짜여짐과 함께 專門搜查員과 그 派遣의 對象이 되는 事案이 明確히 限定되게 되었다.

“

改正이 意圖한 效果가 發揮될 수 있도록 全國의 警察職員에게 그 內容과 趣旨를 충분히 理解시킴과 함께 適確한 制度의 運用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

(2) 解釋上의 留意事項

專門搜查員을 廣域的으로 活用함에 있어 規則의 解釋上 留意事項은 다음과 같다.

ㄱ. 專門搜查員의 派遣에 관련된 協定 締結의 對象事案

이것에 관해서는 航空機事故, 列車事故 그 밖에 警察廳長官이 정한 事案으로 되어 있다. (規則 第12條 第1項)

具體的으로는 現在 이미 運用되고 있는 大規模 事故事件과 타갈로그語, 타이語, 우루도우語 等 소수아시아系 言語로 通譯이 必要한 事件 等に 더하여, 기타 搜查에 위의 事件과 같은 精度의 專門性을 要求받는 事案이 이의 對象이 된다고 생각된다.

ㄴ. 專門搜查員의 派遣에 관한 警察廳 혹은 管區警察局의 調整

專門搜查員의 派遣에 관해서 援助側·被援助側의 關係에 서게 되는 市道郡 경찰이 各各

複數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個個의 派遣 要求에 對하여 當事者간 調整을 취할 必要가 있다. 시도군 경찰 相互間에 協定을 締結했을 때는 該當 協定에 관련하여 專門搜查員에 관한 資料를 경찰청 및 管區警察局에 提出하기로 한것(規則 第13條)은 이 調整用으로 提供하기 위함이다.

V. 결론

금번 刑事警察에 관계하는 制度의 改正은 犯罪搜查共助規則 및 犯罪搜查規範의 制定 以來 實로 37年만의 本格的인 것이다. 今後は 治安의 維持·向上이라고 하는 警察의 責務를 實現함과 아울러 改正이 意圖한 效果가 發揮될 수 있도록 全國의 警察職員에게 그 內容과 趣旨를 충분히 理解시킴과 함께 適確한 制度의 運用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 지존파사건은 증오범죄(Hate Crime)인가?

증오범죄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균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의 형태로서 특정집단에 증오를 품고 가하는 폭력·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인종편견, 종교갈등, 동성애 등에 대한 증오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찾기가 힘들고 미국등지에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다.

미국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92년 미전역에서 발생한 인종혐오범죄건수만 4천 5백여건에 이른다.

'92년 로스엔젤레스일대를 휩쓴 흑인폭동의 시발점이 된 '로드니킹사건'도 인종차별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증오범죄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집단에 대한 집단적 증오감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으로 순간적 분노나 감정 폭발이 범죄로 이어지는 걱정범죄와 조직성·치밀성 등에서 크게 구별된다.

미국의 범죄전문가들에 의하면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도덕적 리더쉽부재, 도덕붕괴, 특정인종 또는 신분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추세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제침체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경악케했던 지존파일당의 엽기적 범죄행각은 과연 증오범죄에 해당되는지?

- 한양대 심영희교수등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균열지점은 빈부의 격차로 가정결손, 학력의 뒤처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등에 기인하여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진자에 대한 증오범죄로서 우리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존파일당의 범행을 증오범죄로 규정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범행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림대 조은경교수등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반드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범인들의 성장배경이나 가족환경 등 개인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총체적으로 빚어내는 문명사회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치안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회복차원에서 전 사회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겨레 21 제28호 참조)

□ 일본 경찰청의 폭력단 근절을 위한 제도개정

일본 경찰청은 최근 일본 폭력단이 도박·마약 및 기업간부 테러에 개입하고 있고 특히 최대 폭력 조직인 山口(야마구치)組가 현금수송차량 습격 및 보복살인 등을 자행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악으로 대두됨에 따라 10월 한달을 「폭력단 종합대책 특별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력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폭력단 대책법」 시행(92. 3) 이후 자금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山口(야마구치)組, 稻川(이나가와)會 등 상당수 폭력조직들이 도박·마약 및 이권개입 등에 다시 손을 뻗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기업간부들을 대상으로 이권과 관련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찰청이 지난 9월 집계한 「94 상반기 폭력단 검거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검거된 폭력단원은 1만 6천 5백여명으로 그중 각성제 사범이 2천 9백여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해·공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의 폭력단 조직인 山口(야마구치)組가 현금수송차량 습격 및 보복살인 등을 자행,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을 뿐만아니라 동 조직원에 의한 범행이 총 검거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폭력단중 가장 심각한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일본 경찰청에서는 폭력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10월 한달을 「폭력단 종합대책 특별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폭력단 대책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폭력단원 검거에 주력함과 동시에 각 기업체에 뿌리박고 있는 폭력단의 근절을 위해 정밀내사 및 폭력추방 캠페인 등 특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중국국적 선박의 「해상여관」

최근 대만부근 공해상에는 중국국적 선박 2~30여척이 자국어부 다수를 승선시킨 이른바 「해상여관」을 형성하므로써 빈 배로 출어 나온 대만국적 어선들이 중국인 어부들을 고용해 어로작업을 한 후 이들을 다시 「해상여관」에 내려놓고 귀항하는 신종 불법취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 국내외 치안동향 ▷

알려지고 있으며,

대만당국에서는 임금의 싸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인 어부를 활용하려는 이와같은 자국 어선들에 대해 통제가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측에서는 이들이 외화를 벌여 자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동 불법취업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수교이후 중국교포(조선족)들이 한국에서의 불법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부근 공해상에 중국교포들로 구성된 「해상여관」이 형성될 경우 국내 수산업계에서도 중국교포들의 저임금과 의사 소통능력을 이용, 이들을 대거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해양순찰강화 및 관련 정보수집 등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 일본 법무성의 외국인 수감자 대책

일본 법무성이 지난 10. 14 발표한 「'94 범죄백서」에 의하면 재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당국이 검거·송치한 외국인이 83년 3천 8백여명에서 93년 1만2천4백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통역문제가 중요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93년 재판과정중 통역상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사건은 43건이었음

이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서는 법정시비를 줄이고 외국인 피고의 인권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1천 1백여명의 통역인(35개국 언어)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일본의 형사재판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한 비디오를 제작중에 있으며 아울러 기소사실의 요지를 피고인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최초공판전 피고측에 송부하는 제도를 조만간 전국지방법원에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도소 수감자(현재 440여명)들이 수감중 언어불통으로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통역센터」를 동경과 대판 2곳에 설치,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에 TV카메라로 연결하므로써 수감자에 대한 통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제1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연구소에서는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1세기 경찰발전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관련 분야 저명학자 및 전문가와 시민, 학생, 경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정책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해균 서울대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안제 서울대교수가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예측」, 그리고 차용석 한양대 법대학장이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상안 경찰대교수, 정정길 서울대교수, 이영란 숙명여대교수, 백형구 변호사 등 4명이 토론을 실시하였다.

□ 치안정책용역연구자 선정

다양하고 심도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치안정책에 관한 학계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실시했던 치안정책 용역연구 공모제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개 과제 13명의 연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과제명 및 연구자는 아래와 같다.

과제 구분	연구 과제 명	연구 자	
		성 명	현 직 위
지 정 과 제	경찰관 사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 상 호	승실대교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김 보 환	동국대교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임 충 희	성균관대교수
	우리의 집회 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 제도 비교 고찰	이 관 회 강 태 수	경찰대학 교수 청주대 전임강사
	경찰에 있어서 위성통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곽 채 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원

◁ 연구소 소식 ▷

과제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자	
		성명	현직위
자 유 과 제	언어를 통한 경찰이미지 개선방안	박경현	경찰대 교수
	교통감시 및 통제를 위한 화상감지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박창호	서울대교수
	생물학적 증거물 채취 KIT개발	박기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활용방안	최원규	전북대교수
	경찰관 성과평가척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윤수	경찰대교수
	음주운전측정치의 정도 관리	박종세	KIST도핑센터장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 - 경찰강제권에 관한 근거법의 정비를 중심으로	남승길	경찰대교수

□ 제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개최예정

치안연구소에서는 12월 14일 예술의 전당 컨퍼런스홀에서 94년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연구실별로 94년도 연구과제중 1개주제씩을 선정, 관련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주제는 「경찰방법활동 개선방안」(파출소 운영체제 개선방안),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방안」, 「교통사고처리의 신뢰성제고 방안」, 「경찰장비와 인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등 5개로서 현안업무의 개선안모색에 중점을 두어 진행할 예정이다.

최 신 판 례

□ 강간치사, 사체손괴

검찰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함

〈판례요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1994. 8. 9. 제1부 판결

94도1228 가. 강간치사, 나. 사체손괴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판결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 노 1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으로 살피건대, 무릇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0. 6. 22. 선고, 90도 764 판결 참조), 원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친누이를 강간치사케 하는 등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인 반면에 위 조서작성시에 임의성을 방해하는 강압의 정도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뺨을 몇차례 맞았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에는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조서에 서명한 사실도 인정될 뿐 아니라 자백한 동기에 대해서도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백하였다라고만 진술할 뿐, 그 자백한 범죄사실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임의성을 부인할만한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졌던 할 것이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어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아직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검찰 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들이고,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성행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조서는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으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의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송치후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신문과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검찰 송치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이 사건 상고이유 제3점인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증과정과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타월로 재갈을 물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기도폐

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한 후, 칼로 우하지 대퇴부 등을 찢러 그 사체를 손괴한 것 인바, 이 사건 강간치사를 은폐하여야 할 사연이 없는 자의 범행이었다면 굳이 그 범행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까지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손수건, 목욕타월, 스타킹이 모두 피해자의 물품이고, 외부인이 위 범죄장소에 침입한 흔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만이 피해자방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누르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다시 그 출입문의 뒷 창문을 통하여 출입문 윗고리를 걸어 이중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 범죄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니면 저질러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한 다음, 이러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원심 거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인의 1심판시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성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이 사건 성관계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함으로 과실치사나 폭해치사가 될 지 언정 강간치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치사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이 1심 판시와 같은 이상 강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더라도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함

〈판례요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994. 8. 9. 제1부 판결
94도131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 954판결(공 1992,2321)
1993. 7. 27. 선고, 93도1435판결(공 1993하,2497)
1992. 2. 8. 선고, 93도3318판결(공 1994상,1043)

— 〈판 결 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12. 선고, 94노11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993. 6. 15.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같은 달 17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읽어 본 후 서명무인 및 간인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별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이래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신문에 대하여 자유로이 부인하거나 변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 진술한 범행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진술에 의하여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탈진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백을 강요당한 결과 그 심리적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다른 피고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93고합33 사건과 93고합599사건의 각 판결문등본이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수궁이 가고 거기에 증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은 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가보안법위반

제1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가 제2심에서 번복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증거능력을 가짐

〈판례요지〉

제1심에서 공판조서 및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를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1994. 7. 29. 제3부 판결, 93도955 국가보안법위반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판결(공 1988, 1556)

1990. 2. 13. 선고, 89도2366판결(공 1990, 707))

1991. 1. 11. 선고, 90도2525판결(공 1991, 786)

〈판결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2. 26. 선고, 91노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3항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3항을 자백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작성의 김석호, 장동혁, 차정해, 강진식, 차우열, 차일례에 대한 진술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제1,3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및 위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원심에 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이 사건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및 1991. 1. 11. 선고, 90도2525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무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차기선, 차기청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됨

—〈판례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

◁ 최신판례 ▷

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차단한 것은 정당하다.

1994. 8. 12 제3부 판결

94도14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다. 공문서변조

라. 동행사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바. 신용카드업법위반

사. 점유이탈물횡령

아. 도로교통법위반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판결(공1983,629)

— 〈판결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4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판결 참조),

이를 절도죄로 의율 차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상상 벌점의 배점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례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상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994. 8. 12. 제2부 판결

94누219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판결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 23. 선고, 93구2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 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상 상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 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 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 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의 소를 도로교통법위반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구소 게시판

치안 현장에서의
살아 숨쉬는 목소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치안행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합니다.
2. 치안현장에서의 체험이나 조직에 대한 경찰 제위의 말씀을 모집합니다.
3. 치안시책이나 「치안시책자료」에 관한 비판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4. 여러분의 글은 정책부서에 전달하여 시책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치안연구소는 정책부서와 일선을 연결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원고 응모 안내

평소 치안현장에서 체험한 여러가지 살아있는 글이나 현재 경찰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치안연구소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기능에 반영토록 하겠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치안연구소 통신안내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215호실 치안연구소
팩	스	경비 8-3178, 일반 (02) 365-2223
전	화	일반 365-2240 (치안행정, 범죄대책연구실) 365-2241 (교통대책, 과학기술개발연구실) 365-2242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연구운영계)
		경비 8-3171 (치안행정연구실) 8-3172 (범죄대책연구실) 8-3173 (교통대책연구실) 8-3174 (과학기술개발연구실) 8-3175 (사회안정대책연구실) 8-3176/7 (연구운영계)